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9.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8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를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2조)
-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18 유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 위원회에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소속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 위원회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처리 권한 위탁 등
-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함.(안 제4조)
- 조례의 효력을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로 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09. 3. 17 ~ 4. 7(21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제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3.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4.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대해 지원요청
5.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위탁
6. 기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파견근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